

간호학과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내규

[제목 개정 2023.10.16.]

제정 : 2019.07.10

개정 : 2021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2.01

개정 : 2023.10.16

개정 : 2024.03.01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간호학과(이하 “학과” 라 한다)의 학습성과를 평가·관리하기 위한 성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제2조(구성) ① 학과장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을 임명한다. <개정 2021.03.01., 2021.12.01., 2022.12.01.>

② 위원의 구성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추천된 교수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2.01., 2024.03.01.>

③ <삭제 2022.12.01.>

④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2.01.>

제3조(기능)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습성과의 주기적 평가분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10.16.>
2. 졸업생 교육목표 달성 평가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03.01.>
3. 학과의 학습성과의 운영성과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사항
4. 간호학과 학습성과 평가 전산시스템운영,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03.01.>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 학기 중에 개최하며,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01.>

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교수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4.03.01.>

제5조(정족수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4.03.01.>

제6조(안건제출) 위원회의 위원 및 학과 전임교원이 부의 안건이 있는 경우,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 <개정 2022.12.01.>

제7조(회의록) ①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에게 열람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받은 후 보관한다. <개정 2021.12.01.>
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학과 교수회 심의를 거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2.01.>

제8조(운영규정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과 교수회에서 심의한다. <개정 2022.12.01.>

부 칙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